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35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6310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35086 판결

###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범준, 안형주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7,000,0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에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17,156,5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156,5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에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지소 2018. 6. 25. 접수 제16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 유한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69764호 사건으로 “97,745,297원과 그 중 27,699,332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7. 7. 26. B에게 송달되었고 B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017. 7. 11.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31.경 C 유한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C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4. 1. 사망하여 피고, B를 비롯한 4명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B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B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2018가326843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분할약정을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4. "피고가 E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9. 2. 21. E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2. 판 단

### 가.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의 채권자인 E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여 가액배상을 마쳤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더라도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2019. 2. 21. E에게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회복이 마쳐진 7,000,000원과 중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 (1)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그 당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B와 피고 사이에 2018. 4. 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중 B의 상속분인 1/4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미 가액배상에 의한 방법으로 일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피고에게 수익을 얻은 부분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부분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 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의 가액이 46,906,585원이고, 위 지분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22,75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 지분의 공동담보액은 24,156,585원(=46,906,585원-22,750,000원)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미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부분인 7,000,000원을 공제하면 공동담보로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인 17,156,585원(=24,156,585원-7,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17,156,5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156,5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7,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 95.9㎡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 지상

조표  내

조표

빅돌조 슬래브지붕2층다세대주택

1층 56.25㎡

2층 50.41㎡

